작성방법 1.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2.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,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. 3.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(｢법인세법｣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). 4.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(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), 현금영수증, 계산서･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･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, 국외지역 지출액,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 가.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：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. 나. 국외지역 지출액란：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1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. 다. 농어민 지출액란：⑬에는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｢법인세법｣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,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. 라.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：⑮에는 ⑩,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⑯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. 마.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, ⑪, ⑬ 및 ⑮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 5. ⑱접대비부인액란：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(⑥란과 ⑰란의 합계) 적습니다.\_\_ 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